

소 방 공 무 원 승 진 임 용 규 정 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령 안

1. 개정이유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 일부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 정비(특수지 근무에 대한 가점평정 근거 삭제, 인사교류 경력에 대한 가점평정 근거 마련, 기본경력 및 초과경력 평정점수표 수정),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계산 기준일** 및 경력 평정 기준 명확화, 승진심사위원회 관할과 근무성적 평정권한 일치 등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하여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 가. 소방공무원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계산 기준일** 명확화(안 제3조제1항)
- 나. 경력평정의 기준 명확화(안 제6조제1항)
- 다. 특수지 가점 삭제, 격무·기피부서 가점 부여방법 변경, 인사교류 경력에 대한 가점평정 근거 마련(안 제15조의2)
- 라. 119특수구조단·소방체험관 추가, 중앙119구조본부·중앙소방학교·국립소방연구원 근무성적 평정자 변경(안 별표1)
- 마. 기본경력 및 초과경력 평정점수표 변경(안 별표3)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인사혁신처 협의 진행 중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의 계산 기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승진 : 1차 시험일의 전월 말일
2. 심사승진 : 승진심사를 실시하는 달의 전월 말일
3. 특별승진 : 승진임용예정일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경력평정의 기준) 제10조제1항에 따라 영 제5조제4항의 경력을 산입할 때에는 제3조제2항의 계산방법을 따른다.

제15조의2제1항 중 “2.0점을”을 “2.0점, 제6항에 따른 가점은 3.0점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격무·기피부서 및 특수지에서 6월을 초과하여”를 “격무·기피부서에”로, “그 초과한 날부터 가점평정한다”를 “근무한 날부터 가점평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전단 중 “제4항”을 “제4항과 제6항”으로 한다.

⑥ 전국 소방행정 균형발전을 위해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인사교류의 대상이 된 소방공무원은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점평정한다.

별표 1과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근무성적의 평정자(제6조 관련)

소속		직급	1차 평정자	2차 평정자
소방청	관·국	소방정	소속 국장	차장
	관·국 외		소속 과장	
중앙소방학교			중앙소방학교장	차장
중앙119구조본부			중앙119구조본부장	차장
국립소방연구원			국립소방연구원장	차장
시·도 소방본부			소속 시·도 소방본부장	소속 시·도 부시장 또는 부지사. 다만, 지방 소방학교장의 경우에는 차장
소방서				
지방소방학교				
서울종합방재센터				
119특수대응단				
소방체험관				
소방청	관·국	소방령 및 소방경	소속 과장	소속 국장
	관·국 외			차장
중앙소방학교		중앙소방학교장	차장	
중앙119구조본부		중앙119구조본부장	차장	
국립소방연구원		소방령	국립소방연구원장	차장
		소방경	소속 과장	국립소방연구원장
시·도 소방본부		소방령 및 소방경	소속 부서장(과장 등)	소속 시·도 소방본부장
소방서			소속 소방서장	
지방소방학교			소속 지방소방학교장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119특수대응단			119특수대응단장	
소방체험관			소방체험관장	
소방청	관·국	소방위 이하	소속 과장	소속 국장
	관·국 외			차장
중앙소방학교				중앙소방학교장
중앙119구조본부				중앙119구조본부장
국립소방연구원				국립소방연구원장
시·도 소방본부		소방위	소속 부서장(과장 등)	소속 시·도 소방본부장
소방서		이하	소속 부서장(과장, 안전	소속 소방서장

		센터장, 구조대장). 다만, 본인이 부서장인 경우에는 해당 소방서의 인사주무과장(소방행정과장)	
지방소방학교		소속 부서장(과장 등)	소속 지방소방학교장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119특수대응단		소속 부서장(과장 등)	119특수대응단장
소방체험관		소속 부서장(과장 등)	소방체험관장

비고

1. "관·국 외"란 운영지원과, 대변인실, 119종합상황실, 청장실 및 차장실, **감사담당관, 교육훈련담당관**을 말한다.
2. "소속 국장"에는 기획조정관을, "소속 과장"에는 대변인, 담당관, 실장, 팀장·구조대장·센터장 등 과장급 부서장을 포함한다.
3. 청장실 및 차장실의 경우 운영지원과장을 소속 과장으로 본다.
4. 소방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정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 가. 평정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 나.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기관에 소속된 소방공무원의 경우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본경력 및 초과경력 평정점수표(제13조제2항 관련)

구 분	계 급	기간	월별 점수	기간별 점수				
기 본 경 력	소방정	4년	0.541점	연수 점수	1년 6.49	2년 12.98	3년 19.48	4년 26.00
	소방령 소방경	4년	0.458점	연수 점수	1년 5.50	2년 10.99	3년 16.49	4년 22.00
	소방위 소방장	3년	0.611점	연수 점수	1년 7.33	2년 14.66	3년 22.00	
	소방교	2년	0.917점	연수 점수	1년 11.00	2년 22.00		
	소방사	1년 6월	1.222점	연수 점수	1년 14.66	2년 22.00		
초 과 경 력	소방정	3년	0.111점	연수 점수	1년 1.33	2년 2.66	3년 4.00	
	소방령	5년	0.050점	연수 점수	1년 0.60	2년 1.20	3년 1.80	4년 2.40 5년 3.00
	소방경 소방위	4년	0.062점	연수 점수	1년 0.74	2년 1.49	3년 2.23	4년 3.00
	소방장	1년 6월	0.166점	연수 점수	1년 1.99	1년 6월 3.00		
	소방교	1년	0.250점	연수 점수	1년 3.00			
	소방사	6월	0.50점	연수 점수	1년 3.00			
비고: 월별 점수에 근무한 기간(월)을 곱하여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의 계산) ①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는 시험승진에 있어서는 제1차 시험일을, 심사승진에 있어서는 승진심사를 실시하는 달의 전월말일을, 특별승진에 있어서는 승진임용예정일을 기준으로 각각 계산한다.	제3조(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의 계산) ①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의 계산 기준일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승진 : 1차 시험일의 전월 말일 2. 심사승진 : 승진심사를 실시하는 달의 전월 말일 3. 특별승진 : 승진임용예정일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경력평정의 기준) 제10조제1항에 따라 영 제5조제4항의 경력을 산입함에 있어서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의 채용계급상당이상의 계급으로 근무한 경력에 한하되, 그 경력의 2할로 평정한다.	제14조(경력평정의 기준) 제10조제1항에 따라 영 제5조제4항의 경력을 산입할 때에는 제3조제2항의 계산방법을 따른다.
제15조의2(가점평정) ① 영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가점평정하는 경우 그 가점합계는 5점이내로 하되, 제2항에 따른 가점은 0.5점, 제3항에 따른 가점은 0.5점, 제4항에 따른 가점은	제15조의2(가점평정) ① ----- ----- ----- ----- -----

[현행]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0. 3. 13.>

근무성적의 평정자(제6조 관련)

소속		직급	1차 평정자	2차 평정자
소방청	관·국	소방정	소속 국장	차장
	관·국 외		소속 과장	
중앙소방학교			중앙소방학교장	차장
중앙119구조본부			중앙119구조본부장	차장
국립소방연구원			국립소방연구원장	차장
시·도 소방본부			소속 시·도 소방본부장	소속 시·도 부시장
소방서				또는 부지사. 다만, 지방
지방소방학교				소방학교장의 경우에는
서울종합방재센터		차장		
소방청	관·국	소방령	소속 과장	소속 국장
	관·국 외			차장
중앙소방학교			중앙소방학교장	차장
중앙119구조본부			중앙119구조본부장	차장
국립소방연구원			소속 과장	국립소방연구원장
시·도 소방본부		소방령 및 소방경	소속 부서장(과장 등)	소속 시·도 소방본부장
소방서			소속 소방서장	
지방소방학교			소속 지방소방학교장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소방청	관·국	소방경 이하	소속 과장	소속 국장
	관·국 외			차장
중앙소방학교				중앙소방학교장
중앙119구조본부				중앙119구조본부장
국립소방연구원				국립소방연구원장
시·도 소방본부		소방위 이하	소속 부서장(과장 등)	소속 시·도 소방본부장
소방서			소속 부서장(과장, 안전 센터장, 구조대장). 다 만, 본인이 부서장인 경	소속 소방서장

		우에는 해당 소방서의 인사주무과장(소방행정 과장)	
지방소방학교		소속 부서장(과장 등)	소속 지방소방학교장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비고

1. "관·국 외"란 운영지원과, 대변인실, 119종합상황실, 청장실 및 차장실을 말한다.
2. "소속 국장"에는 기획조정관을, "소속 과장"에는 대변인, 담당관, 실장, 팀장·구조대장·센터장 등 과장급 부서장을 포함한다.
3. 청장실 및 차장실의 경우 운영지원과장을 소속 과장으로 본다.
4. 소방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정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 가. 평정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 나.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기관에 소속된 소방공무원의 경우

[개정안]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0. 3. 13.>

근무성적의 평정자(제6조 관련)

소속		직급	1차 평정자	2차 평정자
소방청	관·국	소방정	소속 국장	차장
	관·국 외		소속 과장	
중앙소방학교			중앙소방학교장	차장
중앙119구조본부			중앙119구조본부장	차장
국립소방연구원			국립소방연구원장	차장
시·도 소방본부			소속 시·도 소방본부장	소속 시·도 부시장 또는 부지사. 다만, 지방 소방학교장의 경우에는 차장
소방서				
지방소방학교				
서울종합방재센터				
119특수대응단				
소방체험관				
소방청	관·국	소방령 및 소방경	소속 과장	소속 국장
	관·국 외			차장
중앙소방학교		중앙소방학교장	차장	
중앙119구조본부		중앙119구조본부장	차장	
국립소방연구원		국립소방연구원장	차장	
		소속 과장	국립소방연구원장	
시·도 소방본부		소방령 및 소방경	소속 부서장(과장 등)	소속 시·도 소방본부장
소방서			소속 소방서장	
지방소방학교			소속 지방소방학교장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119특수대응단			119특수대응단장	
소방체험관			소방체험관장	
소방청	관·국	소방위 이하	소속 과장	소속 국장
	관·국 외			차장
중앙소방학교				중앙소방학교장
중앙119구조본부				중앙119구조본부장
국립소방연구원				국립소방연구원장
시·도 소방본부		소방위	소속 부서장(과장 등)	소속 시·도 소방본부장

소방서	이하	소속 부서장(과장, 안전센터장, 구조대장). 다만, 본인이 부서장인 경우에는 해당 소방서의 인사주무과장(소방행정과장)	소속 소방서장
지방소방학교		소속 부서장(과장 등)	소속 지방소방학교장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119특수대응단		소속 부서장(과장 등)	119특수대응단장
소방체험관		소속 부서장(과장 등)	소방체험관장

비고

1. "관·국 외"란 운영지원과, 대변인실, 119종합상황실, 청장실 및 차장실, **감사담당관, 교육훈련담당관**을 말한다.
2. "소속 국장"에는 기획조정관을, "소속 과장"에는 대변인, 담당관, 실장, 팀장·구조대장·센터장 등 과장급 부서장을 포함한다.
3. 청장실 및 차장실의 경우 운영지원과장을 소속 과장으로 본다.
4. 소방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정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 가. 평정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 나.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기관에 소속된 소방공무원의 경우

[현행]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0. 3. 13.>

기본경력 및 초과경력 평정점수표(제13조제2항 관련)

구 분	계 급	연수	월별 점수	연수별 점수				
기 본 경 력	소방정	4년	0.541점	연수 점수	1년 6.49	2년 12.98	3년 19.48	4년 26.00
	소방령 이하 소방장 이상	4년	0.458점	연수 점수	1년 5.50	2년 10.99	3년 16.49	4년 22.00
	소방교 이하	3년	0.611점	연수 점수	1년 7.33	2년 14.66	3년 22.00	
초 과 경 력	소방정	3년	0.111점	연수 점수	1년 1.33	2년 2.66	3년 4.00	
	소방령	5년	0.050점	연수 점수	1년 0.60	2년 1.20	3년 1.80	4년 2.40 5년 3.00
	소방경 및 소방위	4년	0.062점	연수 점수	1년 0.74	2년 1.49	3년 2.23	4년 3.00
	소방장 및 소방교	2년	0.125점	연수 점수	1년 1.50	2년 3.00		
	소방사	1년	0.25점	연수 점수	1년 3.00			
비고: 월별 점수에 근무한 기간(월)을 곱하여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개정안]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0. 3. 13.>

기본경력 및 초과경력 평정점수표(제13조제2항 관련)

구 분	계 급	기간	월별 점수	기간별 점수				
기 본 경 력	소방정	4년	0.541점	연수 점수	1년 6.49	2년 12.98	3년 19.48	4년 26.00
	소방령 소방경	4년	0.458점	연수 점수	1년 5.50	2년 10.99	3년 16.49	4년 22.00
	소방위 소방장	3년	0.611점	연수 점수	1년 7.33	2년 14.66	3년 22.00	
	소방교	2년	0.917점	연수 점수	1년 11.00	2년 22.00		
	소방사	1년 6월	1.222점	연수 점수	1년 14.66	2년 22.00		
초 과 경 력	소방정	3년	0.111점	연수 점수	1년 1.33	2년 2.66	3년 4.00	
	소방령	5년	0.050점	연수 점수	1년 0.60	2년 1.20	3년 1.80	4년 2.40 5년 3.00
	소방경 소방위	4년	0.062점	연수 점수	1년 0.74	2년 1.49	3년 2.23	4년 3.00
	소방장	1년 6월	0.166점	연수 점수	1년 1.99	1년 6월 3.00		
	소방교	1년	0.250점	연수 점수	1년 3.00			
	소방사	6월	0.50점	연수 점수	1년 3.00			
비고: 월별 점수에 근무한 기간(월)을 곱하여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의안 소관 부서명 >

소방청 운영지원과	
연 락 처	(044) 205 - 7044